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강화(안 제5조제2항)

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

다. 무죄 또는 징계처분 취소 확정 시 의정비 등 소급 지급 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반영(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